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01 발의연월일: 2020. 8. 5.

발 의 자: 김석기·박성민·김희국

박대수 · 송언석 · 정희용

구자근・金炳旭・ 박형수

정진석 · 박덕흠 · 강민국

권성동・김정재・박 진

지성호 · 조태용 · 김기현

태영호 의원(19인)

제안이유

현재 재외동포 수가 75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음.

하지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를 여러 부처가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대한 효율적 집행과 재외동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꾸준히제기되어 왔음.

이에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해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사안에 대해 실 용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 재외동포의 이익증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 함.

주요내용

- 가.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본 청에는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나. 「재외동포재단법」을 폐지하고,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 중 재외 동포청 근무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 2항에 준하여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7조).

법률 제 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를 "국제정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 ③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
- ④ 재외동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 으로 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재외동포재단법을 폐지한다.

제3조(재외동포재단의 해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② 재외동포재단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 제4조(조직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외교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는 재외동포청장이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제5조(재외동포재단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0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와 관련하여 재외동포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행위는 그 업무의 범위 안에서 재외동포청의 행위 또는 재외동포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행위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다.
- 제7조(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특례) ① 재외동포청 장은 이 법 공포 당시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 중 재외동포청 근무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 준하여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력경쟁채용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 항제3호에서 규정한 임용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소요 근무기간 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재단 직원이 임용되는 공무원의 직급을 정할 때에는 재외동포재단에서의 직위 및 근무경력 등을 공무원 직 급체계와 비교하여 재외동포청장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 되, 해당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④ 경력경쟁채용이 되는 재외동포재단 직원의 호봉·수당·경력평정· 최저승진소요연수·연가일수 등의 산정을 위한 근무경력을 계산할 때 에는 종전의 재외동포재단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인정한다.
- ⑤ 그 밖에 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경력경쟁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4 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및 "병무청"을 인용한 경우 "재외동포청"을, "외교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무부장관", "통일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가보훈처장" 및 "병무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재외동포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	제30조(외교부) ①
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	
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u>재외국민의</u>	국제정세-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u>국제정세</u> 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	
무를 관장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
	동포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
	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
	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
<u><신 설></u>	④ 재외동포청에 청장 1인과 차
	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
	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
	공무원으로 보한다.